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윤 판 오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제·개정이유

- 현행 규칙에서 공용차량 운행 주체의 범위에 운전 담당 공무원 외에 ‘의원’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운영 실정(의원이 공적인 업무 수행시, 운전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어 차량을 운행)에 부합하도록 운행 주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조문 개정 및 띄어쓰기 등 오탈자 수정

###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
- 제14조(차량의 사용)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중 “운전원 등” 을 “운전원” 으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의회 의원 및 공무원(운전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 등” 을 “공무원(운전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정수번호부여 등)” 을 “(정수번호 부여 등)”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 ① 의회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차량의 사용을 허

용하면 아니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보험가입여부)” 를 “보험가입 여부)”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